

「 조합원 총회 」 공고

조합 정관 제14조, 제28조 1항 및 6항에 의거 신임 감사 선출, 정관 개정 찬·반 투표와 조합원 징계(제명) 찬·반 투표 실시를 위해 전체 조합원 총회(일제점검과 병행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▶ 안 건

1. 신임 감사 선출의 건.

- 관련근거 : 제14조 (선출방법)

3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현 이사 및 대의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 10일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.

2. 정관 개정 찬·반 투표의 건.

- 관련근거 : 제28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1. 정관 변경 및 조합의 주요사항.

3. 조합원 징계(제명) 찬·반 투표의 건.

- 관련근거 : 제11조 (조합원의 제재)

1. 조합은 조합원 중 국가 또는 조합 발전을 저해하거나 본 정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제 규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.

단, 아래 각 호에 대한 제재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① 조합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

2. 조합의 직책(선출직, 임명직)보유 조합원 중 직분과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- 아 래 -

1. 기 간 : 2014. 6. 9(월) ~ 6. 14(토)

2. 시 간 : 10:00 ~ 17:00(단, 토요일은 13:00)

3. 장 소 : 일제점검 장소

▶ 서 구 : 서인천선착장 입구(2013년 일제점검 장소와 동일)
(북항로 → 20m 지점)

▶ 연수구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1

(송도3교를 지나서 계속 직진 후 막다른 삼거리에서 우회전)

▶ 강화지부 : 2014.06.13(금), 강화대교 고려인삼센터(10:00 ~ 12:00)

4. 신임 감사 선출, 정관 개정 찬·반 투표와 조합원 징계(제명) 찬·반 투표 방법.

전체 조합원의 본인 유.무를 확인하고, 감사 출마자 투표용지, 정관 개정 찬·반 투표용지와 조합원 징계(제명)찬·반 투표용지를 배부 후 설치된 기표소에서 조합원 각 자가 무기명으로 안건에 관한 사항을 투표 함.

5. 기타사항

개별적으로 발송 예정인 정관 개정(안)과 조합원 징계(제명) 찬·반 투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신임 감사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공지 할 것임)

(※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 하시기 바람)

2014. 05. 30.

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민환

